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 삭제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6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 열람 명시 (안 제26 조제2항 신설)	3
2.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 삭제 (안 제27조 삭제 등)	5

I. 제안경위

2025년 7월 3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운영상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대표자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

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Ⅲ. 검토의견

1.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 열람 명시

(안 제26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열람하도록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第26條(運營狀況의 公開) (생략) <신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열람 대상에는 결산결과 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 함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열람 대상에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²⁾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³⁾

당시 법원은 ①현행법 제14조의 취지는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점, ②동 규정이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재정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노동조합의 재정은 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운영을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④현행법 제26조의 열람대상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물 뿐 아니라 공표물과 관련하여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률신문, 「[판결](단독) “노조 재정서류 조합원에 열람허가 해야”」, 2017.5.15.

4)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4037 판결

개정안은 이와 같은 판례를 반영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의 열람권 범위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2.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 삭제

(안 제27조 삭제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노동조합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第27條(資料의 提出) 勞動組合은 行政官廳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96條(過怠料) ① (생략) 1. (생략)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者 3. (생략) ②·③ (생략)	<삭 제> 제9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5) 고용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96조는 동 요구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나, 동 규정이 조합 재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운영상황까지 포함하고 있고, 자료 요구의 기준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고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운영에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⁶⁾

이와 관련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재정에 대해 공공당국이 행사하는 통제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검사를 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당국의 재량적인 권리는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대한 개입의 위협을 수반한다.”고 한 바 있음.⁷⁾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행정관청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

6)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박영사, 2023, 906면.

7) 한국노동연구원,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제6판)』, 2018, 172면.

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되며, 동 조항의 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고하여야 할 내용은 이미 현행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보고의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동 조항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에도 운영 상황 등을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민사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법 제27조는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등 일정 부분 순기능⁹⁾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과 연계하여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제

8)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6** :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상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통제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횟수는 총 31건이었고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과태료 부과 횟수는 5건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대개가 노동조합 내부에서 요청된 사정, 즉 조합원의 민원제기 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었던 상황 때문이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보고하여야 할 내용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으로서 이미 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보고의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9)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조합을 지도하였으나 미이행 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정보를 조합원에게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임.

도보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부칙

개정안은 별도의 부칙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안 제26조제2항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부터로 할지, 법 시행 전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지를 정하여 적용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35